알아두기

01 학교폭력

- 학교 내·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감금, 협박, 약취·유인, 명예훼손·모욕, 공갈, 강요·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.

02 긴급조치

- 학교폭력이 신고 및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친 후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. 그러나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조치 등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.

03 학교폭력 전담기구

- 교감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(학교폭력 문제 담당 교사),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학교 내 전담기구입니다.
-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(또는 소속교원)는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사안조사를 실시합니다. 이후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인지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를 심의합니다.

04 학교장 자체해결

-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,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.
- 학교장 자체해결 시에는 관련학생 간 관계회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기도 합니다.

0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

-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, 피해학생의 보호,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, 피해 및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입니다.
-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피해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합니다.

CONTENTS

차 례

Ⅰ 학교폭력의 유형과 예방

1. 학교폭력 유형 및 예시 03
2. 학교폭력 징후 및 예방 05

Ⅱ 학교폭력 대처하기

1. 학교 폭력 신고 07
2. 긴급조치 08
3. 사안조사 09
4.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10
5.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11
6.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14

[부록]

1. 학교폭력 관련 신고/도움기관 15
2.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16

I 학교폭력의 유형과 예방

1 학교폭력 유형 및 예시

✹ 학교폭력이란?

학교폭력은 학교 내·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※ 사소한 괴롭힘,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.

✹ 학교폭력의 유형 및 예시

다음은 대표적인 학교폭력의 유형과 예시를 제시한 것으로, 이 외에도 신체·정신·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신체폭력

- 신체를 손,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(상해, 폭행)
-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(감금)
- 강제(폭행, 협박)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(약취)
-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(유인)
-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, 때리기,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

언어폭력

-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(성격, 능력, 배경 등)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,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(명예훼손)
  ※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.
-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(생김새에 대한 놀림,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)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,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(모욕)
-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(협박)

금품갈취(공갈)

-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
- 옷,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
-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거나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

강요

- 강압에 못 이겨 빵이나 물건을 대신사서 가져다주거나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 주는 행위(속칭 빵 셔틀, 와이파이 셔틀), 과제 대행, 게임 대행,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(강제적 심부름)
-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(강요)

따돌림

-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,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
-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, 빈정거림, 면박주기, 겁주는 행동, 골탕 먹이기, 비웃기
-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

성폭력

- 폭행·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행위
-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
-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,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

사이버폭력

-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방, 모바일 메신저에서 욕설을 하거나 상대를 비하하고, 거짓된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(사이버 언어폭력)
-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(사이버 명예훼손)
- 사이버머니, 금품갈취형으로 주로 와이파이 셔틀, 게임머니 등 사이버상의 갈취 형태의 괴롭힘(사이버 갈취)
-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, 사진,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점차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모든 행위(사이버 스토킹)
- 인터넷 대화방, 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한 뒤 놀리고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(사이버따돌림, 사이버감금)
-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나 각종 유해성 사진, 영상 등을 전송·유포하여 괴롭히는 행위(사이버 영상 유포)

2 학교폭력 징후 및 예방

학교폭력의 징후[1)]

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학교폭력의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.

※ 어느 한 가지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학생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으며,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.

피해학생의 징후

-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.
- 멍하게 있고,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.
-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.
-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. 또한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.
- 수련회, 봉사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.

가해학생의 징후

-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,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.
- 성미가 급하고,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.
-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에 자주 노출된다.
- 평소 욕설 및 친구를 비하하는 표현을 자주한다.
- SNS 상에 타인을 비하, 저격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게시한다.

학교폭력 예방

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자녀의 학교폭력을 사전 예방하도록 합니다.

❶ 아이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로 소외시키거나, 괴롭히는 행동도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.
❷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꼭 이야기하도록 당부하세요.
❸ 주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세요.
❹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세요.
❺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인 상담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.

1) 푸른나무재단 제공

Ⅱ 학교폭력 대처하기

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안처리가 진행됩니다.

진행과정	진행사항
학교폭력사건 발생 인지 및 신고	• 학교(교사), 117 등에 연락하기
학교폭력 사안 접수	•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
긴급조치 (학교장 필요시)	• 피해학생 보호 조치 • 가해학생 선도 조치
사안조사 (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)	•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(서면조사, 면담 조사 등) •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요구 파악 ※ 통역 등 전문가 도움 요청 가능
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	•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

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

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여부 확인

동의

학교장 자체해결

부동의

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
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

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치 결정

1 학교폭력 신고

교내 신고방법

- **구두** :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겪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(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)에게 말하여 신고합니다.
- **신고함** : 학교에 설치된 신고함에 신고서를 넣어 신고합니다.
- **이메일** : 담임교사나 책임교사 또는 학교명의 메일로 신고합니다.
- **홈페이지** :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.
- **휴대전화** : 전담기구 소속교사(교감, 담당교사, 책임교사, 보건교사, 상담교사)나 학교명의 공동 휴대전화의 문자, 음성녹음, 통화 등을 통해 신고합니다.
- **학교전담경찰관** :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합니다.

교외 신고방법

- **117 학교폭력 신고센터** : 국번 없이 117로 전화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을 받거나 학교폭력을 신고합니다.

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	**안전 Dream(또는 검색어 117)으로 신고**
#0117	**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·상담**

※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,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, 수사, 법률상담, 쉼터 연계 등 종합 지원이 가능합니다.

- **사이버폭력 신고** :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(#1338)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(www.cyber.go.kr)의 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합니다.

※ 사이버폭력 피해입증을 위해 게시일시, 공간, 글 내용이 나오도록 화면을 캡처하며, 상대방 ID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주소, 접속IP 등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합니다.

[참고] 자녀에게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대처해주세요.

-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주세요.
  - "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, 지금이라도 이야기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.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?"라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.
- 감정을 잘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를 이끌어주세요.
  - 아이들은 이야기를 하면 혼날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부모님도 해결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. 다그치기보다는 따뜻한 말로 대화를 이끌어 주세요.
- 폭력을 당하는 자녀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.
  - "너한테도 문제가 있으니 당하는 거 아니니."와 같은 말은 자녀에게 심리적 위축과 자존감을 저하해요.

2 긴급조치

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긴급조치

학교폭력 사안처리 초기에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를 취하게 됩니다.

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	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
•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• 일시보호 •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(피해 및 가해학생의 분리가 가능한 학교 자체의 특별보호프로그램 운영 등)	•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•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• 학교에서의 봉사 •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• 출석정지

※ 가해학생이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학칙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조치

다음의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- 2명 이상이 고의적·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
-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
- 신고, 진술,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
-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
※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한 후에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 한 경우에는 긴급조치로 인한 결석 기간을 출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3 사안조사

○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은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구체적인 사안조사를 실시합니다.

○ **(사실확인)** 서면조사,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, 사안 발생 현장 조사 등 종합적인 방법으로 사안을 확인합니다.

- **확인서** : 피해 및 가해학생 확인서, 목격학생 확인서
- **설문조사** : 피해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
- **증거 자료 수집** : 이메일, 채팅, 게시판, SNS, 피해사실 화면 온라인 상 캡처, 문자 메시지, 관련 사진, 동영상 자료, 음성증거자료 등
- **진단서 및 소견서** :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·정신적 진단서, 의사 소견서 등

○ **(요구사항 확인)** 피해·가해 상황에 대한 수용 정도 및 사과, 처벌,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, 재발 방지 요구 등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요구를 확인합니다.

※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파악하기도 하며,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.

○ **(학교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)** 학교폭력 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을 판단합니다.

-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
- 피해학생이나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
-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·지속성·고의성
-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
-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
-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

[참고] 다문화학생(중도입국·외국인학생) 사안조사 지원

-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다문화학생의 경우 통역 또는 관련 담당교사의 도움을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.
- 서면조사 시에는 한국어로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하거나 모국어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시·도교육청 등에 다문화학생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담사가 상주하는 경우 중도입국·외국인학생의 면담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4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

○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하고,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의사를 확인합니다.

※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감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(학교폭력 문제 담당 교사),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학교 내 전담기구입니다.

〈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따른 사안처리 절차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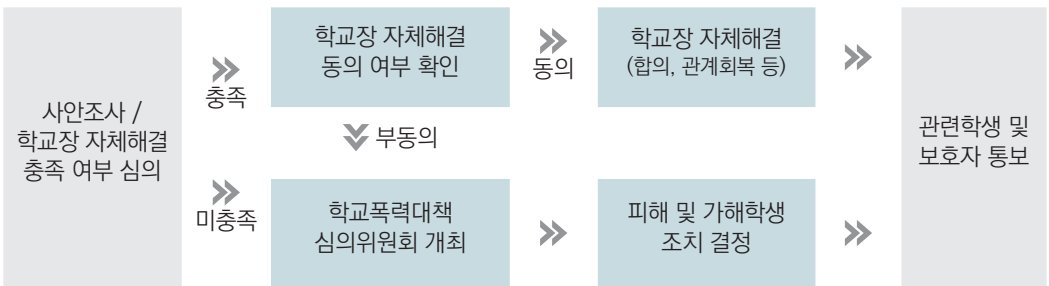

✹ 학교장 자체해결

○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, 다음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- ✓ 2주 이상의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
- ✓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(신체적·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 포함)
- ✓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
- ✓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, 진술,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

○ 학교장 자체해결 시에는 양자 간의 화해, 가해학생의 사과와 피해학생의 용서 등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. 또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상담, 캠페인 활동, 교내·외 봉사 등의 교육 프로그램 또는 관련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실시되기도 합니다.

[참고]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

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-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

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

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?

-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, 피해학생의 보호,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, 피해 및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입니다.
-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니거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.

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

- **(심의사항)**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합니다.
  - ✓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
  - ✓ 피해학생의 보호
  - ✓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
  - ✓ 피해 및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
  - ✓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건의하는 사항 등
- **(심의방식)** 피해 및 가해학생,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.
  - 단,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전화, 화상,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  -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**(조치결정 통보)** 심의위원회의는 심의를 실시한 후 피해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합니다.
  -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을 피해·가해측 또는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조치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.

피해학생 보호조치

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(또는 여러 개)의 조치사항을 결정합니다. 이후 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.

- **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** :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·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·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
- **일시보호** :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
- **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** :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·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

  ※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학교로 제출
- **학급교체** :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
- **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** :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의료기관 연계, 법률 구조기관,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등

[참고] 추가적인 피해학생 보호 지원

- (출석일수 산입)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진단서, 의사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.
- (불이익 금지)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,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합니다.
- (정보 안내)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학교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  -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에 대한 정보
  - 학교폭력 피해 관련 지원 프로그램
  - 학교폭력 화해 분쟁 조정 기관에 대한 정보 등

가해학생에 대한 조치

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을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처분을 병행하여 조치사항을 결정합니다.

- **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** :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
- **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** : 피해학생이나 신고·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
- **학교에서의 봉사** :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는 조치
- **사회봉사** : 학교 밖 행정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,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
- **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** :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,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
- **출석정지** :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,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
  ※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,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
- **학급교체** :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
- **전학** :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
- **퇴학처분** :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·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(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적용하지 않음)
  ※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[참고]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

-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'조치로서의 특별교육'외에도 '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'및 '퇴학처분'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'부가된 특별교육'이 있습니다.
- 이때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특별교육에 불응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6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

○ **(관계회복)**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이 관련 피해 및 가해학생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, 소통,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 개별면담을 통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.

-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강제적인 것이 아닌 피해학생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됩니다.
-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이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으며, 어느 한 명이라도 중단할 의사를 표명할 경우 언제든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○ **(분쟁조정)**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손해발생 등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합니다.

- **(분쟁조정 신청)** 분쟁조정은 분쟁당사자(피해 및 가해측)가 다음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, 〈분쟁조정신청서〉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신청합니다.
  - ✓ 피해학생 측의 치료비,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 요구
  - ✓ 가해학생 측의 치료비,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한 합의 요구

  ※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 분쟁조정을 시작하며,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.
- **(분쟁조정의 거부/중지)**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.
  - ✓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
  - ✓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·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
  - ✓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- **(분쟁조정의 성립)** 분쟁조정이 성립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분쟁내용 및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,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. 분쟁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가해학생 조치결정 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.

[부록 1] 학교폭력 관련 신고/도움기관

1388	**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** 청소년의 위기, 학교폭력 등의 상담, 신고 전화입니다. 1388 www.cyber1388.kr
푸른나무재단 The Blue Tree Foundation	**푸른나무재단** 학교폭력관련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고,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및 가족 대상 통합지원을 실시합니다. 학교폭력SOS지원단은 화해·분쟁조정지원, 사안처리 진행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. 1588-9128 www.btf.or.kr
대한법률구조공단 KOREA LEGAL AID CORPORATION	**대한법률구조공단** 법률상담,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실시합니다. 132 www.klac.or.kr
We 우리가 희망이다!	**Wee 프로젝트** 학교 및 교육(지원)청에서 학생 상담을 지원합니다. ※ Wee클래스(학교단위) - Wee센터(교육지원청 단위) - Wee스쿨(시·도교육청 단위) www.wee.go.kr
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	**도란도란**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사안처리 관련 콘텐츠를 제공합니다. www.dorandoran.go.kr
EDUNET T-CLEAR	**에듀넷 티-클리어** 학교폭력 관련 교수·학습 자료와 사이버폭력 예방 및 정보윤리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. www.edunet.net
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사이버안전지킴이	**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** 사이버 범죄 신고·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www.police.go.kr/www/security/cyber.jsp
안전Dream 아동·여성·장애인 경찰지원센터	**안전Dream(아동·여성·장애인 경찰지원센터)**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신고·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www.safe182.go.kr
스마트쉼센터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Center	**스마트쉼 센터(인터넷 중독 상담센터)** 인터넷 과다사용 관련 상담(게시판, 메신저 등)을 제공합니다. www.iapc.or.kr

[부록 2]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

(2019.12월 기준)

지역	순번	기관명	주소	연락처	지원유형			
					상담지원	일시보호		병원
						긴급	기숙	
전국 (1)	1	**해맑음센터**	대전시 유성구 대금로 77	070-7119-4119	O	-	O	-
서울 (3)	2	**서울 통합Wee센터**	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	02-3999-505	O	O	-	-
	3	**서울 마음이랑Wee센터**	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80 성동교육지원청 106호	02-2297-7887	O	O	-	-
	4	**서울 밝음이랑Wee센터**	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길 97	02-853-2460	O	O	-	-
부산 (1)	5	**갈등회복센터 비상**	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91, 1동 125호	051-203-8116	O	-	-	-
대구 (1)	6	**대동Wee센터**	대구시 동구 화랑로 177-2 대동병원 별관 1층	053-746-7386	O	-	-	O
인천 (1)	7	**인천시Wee센터 (사랑과희망의피그말리온센터)**	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69번길 73 2층	032-550-1703	O	-	-	-
광주 (4)	8	**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**	광주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5층	062-226-8181	O	-	-	-
	9	**마음이음심리상담센터**	광주시 서구 회재로 888 5층	062-654-3030	O	-	-	-
	10	**아이누리발달심리상담센터**	광주시 북구 설죽로 510 상지빌딩 4층	062-574-6850	O	-	-	-
	11	**호남대학교학생상담센터**	광주시 광산구 호남대길 20	062-940-5630	O	-	-	-
대전 (2)	12	**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**	대전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대전청소년위캔센터 6층	042-257-2000	O	-	-	-
	13	**대전YMCA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**	대전시 중구 대흥로 128	042-254-3038	O	-	-	-
울산 (1)	14	**울산교육청 힐링Wee센터**	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언양로 103번지 2층	052-255-8190	O	O	-	-
세종 (1)	15	**세종아람센터 (세종Wee센터)**	세종시 도움1로 116 종촌종합복지센터 2층	044-715-7979	O	-	-	-
경기 (10)	16	**꿈나무아동종합상담소**	경기도 부천시 안곡로 194번길 14	032-347-7205	O	-	-	-
	17	**누림청소년교육복지센터**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화랑로 358 자유센터빌딩 315호	031-402-4145	O	-	-	-
	18	**라파엘상담복지센터**	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전로 81-10 (전곡읍)	031-832-6401	O	-	-	-
	19	**마음쉼터 심리상담센터**	경기도 이천시 서희로 91 (창전동 425-28)	031-635-1279	O	-	-	-
	20	**심리정서 연구소 지음**	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 중앙1길 6-1, 3층	031-775-5507	O	-	-	-
	21	**수원아동청소년정신건강 복지센터**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 1층	031-242-5737	O	-	-	-
	22	**토당청소년수련관**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25	031-970-0031	O	-	-	-
	23	**한울심리발달지원센터**	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544, 4층	031-572-6377	O	-	-	-
	24	**한국교육협회**	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길 58번지 2층	031-656-1885	O	-	-	-
	25	**한울교육문화지원센터**	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305, 304호	031-946-9069	O	-	-	-

지역	순번	기관명	주소	연락처	지원유형			
					상담지원	일시보호		병원
						긴급	기숙	
강원 (4)	26	**사임당교육원 (학교폭력피해치유전담센터)**	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84-24	033-640-6530	O	O	-	-
	27	**강원학생교육원**	강원도 춘천시 남면 충효로 1394	033-269-6622	O	O	-	-
	28	**춘천 가정형Wee센터**	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143번길 24	033-262-1607	O	O	-	-
	29	**원주 가정형Wee센터**	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용수골길 344	033-761-0700	O	O	-	-
충북 (1)	30	**한국피해자지원협회 충북 KOVA지부**	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53번길 4(302호)	043-224-9517	O	-	-	-
충남 (1)	31	**꿈그린센터**	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청수7로 37-8 센트럴빌리지 403호	070-4917-7581~5	O	O	-	-
전북 (1)	32	**마음치유센터 (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)**	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6	063-271-0117	O	-	-	-
전남 (3)	33	**고흥청소년우주센터**	전남 고흥군 동일면 덕흥양쪽길200	061-830-1515	O	-	-	-
	34	**국립나주병원**	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-31	061-330-4114	-	-	-	O
	35	**순천의료원**	전남 순천시 서문성터길2	061-759-9597	-	-	-	O
경북 (3)	36	**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(학교폭력피해자지원센터)**	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0	054-850-1075	O	-	-	-
	37	**영주교육지원청 Wee센터**	경북 영주시 가흥로 165	054-630-4216	O	-	-	-
	38	**칠곡교육지원청 Wee센터**	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0길 33	054-979-2129	O	-	-	-
경남 (7)	39	**(창원) 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= 창원교육지원청Wee센터**	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28번길 3	055-210-0461	O	-	-	O
	40	**(진주)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= 진주교육지원청Wee센터**	경남 진주시 비봉로 23번길 8 진주교육지원청 4층	055-740-2091	O	-	-	O
	41	**(김해)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= 김해교육지원청Wee센터**	경남 김해시 삼안로 24번길 7 서관 4층	070-8767-7576	O	-	-	O
	42	**(사천)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= 사천교육지원청Wee센터**	경남 사천시 삼상로 85	055-830-1544	O	-	-	O
	43	**(통영)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= 통영교육지원청Wee센터**	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25-32 통영교육청	055-650-8025	O	-	-	O
	44	**(양산)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= 양산교육지원청Wee센터**	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53 양산교육지원청 2층	055-379-3263	O	-	-	O
	45	**(밀양)아이좋아 희망드림센터 = 밀양교육지원청Wee센터**	경남 밀양대로 1524 영재교육원 1층	055-350-1490	O	-	-	O
제주 (4)	46	**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**	제주도 제주시 노형로 395 단일빌딩 3층	064-725-7999	O	-	-	-
	47	**제주행복드림상담센터**	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1길5 정도빌딩 3층	064-752-5354	O	-	-	-
	48	**다움청소년상담지원센터**	제주 서귀포시 서문로 32	064-762-1318	O	-	-	-
	49	**인문숲이다**	제주시 구남로49, 2층	-	O	-	-	-